

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안내



물류기술개발자의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신청의 **부담완화**를 위해
필수서류 제출 폐지 및 작성양식 개선 등 **서류간소화**를
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지정절차



- ✔ **보호기간** : 최초 지정시 5년(5년 연장 가능)
- ✔ **신청자격** :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소화·개량한 자
- ✔ **접수시기** : 연중 수시 접수
- ✔ **접수처** :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
* 문의처: 031-389-6587, yhhan1428@kaia.re.kr

제출서류

연번	기존	개선('25.6.)
1	신청공문	좌동
2	지정 신청서	지정신청서 내 기술설명서 양식 간소화
3	지정 신청서 부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✔ 지식재산권에 대한 증빙자료 ✔ 신청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증빙자료 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	지정 신청서 부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✔ 지식재산권에 대한 증빙자료 ✔ (해당시) 신청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증빙자료 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* 공인시험기관이 없을 경우, 사유 및 자체시험결과로 대체 ✔ (해당시) 연구보고서 및 발표논문 ✔ (해당시) 신청기술의 현장 활용실적, 제품판매 실적 증빙자료 등(단, 제품 생산현장/적용현장/제품판매 실적 중 1개 이상 보유) ✔ (해당시) 녹색기술 인증서, 산업신기술 지정증서 등 기타 증빙자료
4	공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서	삭제(필수 제출 폐지)
5	신청기술 및 신청인 현황, 활용실적 서약서, 지정대상 분류표	좌동
6	법인일 경우, 법인 증빙자료 / 개인일 경우, 개인 증빙자료	좌동
7	(해당시) 지식재산권 활용동의서	좌동
8	(해당시)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한 경우 제재관련 문서 사본	좌동